

가사근로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의 의의

황 덕 순*

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관한 협약(제189호)」(이하, '가사근로자 협약')을 통해 “가사근로자와 관련하여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 가사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승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 …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사이에 통상적인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관한 보상, 일간·주간 휴식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평등대우를 보증 … 가사근로자의 모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사회보장 보호에서 통상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하회하지 않는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되, 모든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을 가사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사근로자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미 세계적으로 22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가이아나, 모리셔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등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가칭)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이 고용주가 되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증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특별법에 따라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 관련 권리와 사회보험 관련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사근로자의 경우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사회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한 비율이 6.5%에 불과할 정도로 각종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법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지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더라도 가사근로자 보호가 완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정책방향은 본질적으로 가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되는 고용관계를 법적인 보호의 틀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증 제공기관이라는 제3자가 고용하는 방식, 즉 현재의 중개기관을 고용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직 사적 공간인 가구 내로까지 국가의 규제와 행정감독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제도화 방식에서 제공기관은 사회보험료 부담 및 근로자 관리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이 인상되고, 근로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존의 대규모 중개업체 중심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용자를 지원하는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이 이용자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혹은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인상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공식화 방안이 잘 정착될 수도 있지만, 서비스 가격 인상을 회피하거나, 조세제도를 통한 복잡한 환급 절차를 번거로워 하는 이용자 가구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가사서비스 시장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제도화의 성공적인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가구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 거래 관계도 노동법과 사회보장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고용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자 고용관계를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인 제도화 방안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양자 고용관계를 계속 비공식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사근로 공식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분명해지면, 시장참여자들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제도화된 시장으로 들어올 유인도 더 커질 것이다.

이번 호 『노동리뷰』에서는 가사근로의 비공식성을 비롯한 가사근로자 고용실태, 가사근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가사근로의 노동법적 포섭과 관련된 논점 등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가사근로의 공식화가 일조일석에 완결될 수는 없다. 현재 추진되는 제도화 방안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확대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사각지대를 크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KL**